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321-357  
<https://doi.org/10.29212/mh.2024..133.3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모병실태

김선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목 차
- 머리말
  -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일제 군경력자의 활용  
가.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모병정책  
나. 북한의 모병연령과 일제 군경력자의 활용
  - 국가수립 전후 모병사업의 실태와 모병 기준  
가. 1948년 7월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모병사업과 신체적·사상적 기준  
나. 1949년 2월 민족보위성의 모병사업과 합격기준의 강화
  - 맺음말

**초 록** 북한의 병역제도는 국가수립을 전후해 기본적으로 모병제로 시작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육군의 편제상 정원을 충원해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기 위해 1948년 1월 20일에 신병을 모집했다. 그리고 전체

부대를 완편하고 신편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1948년 7월부터 만 18~24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소련군 철수로 인한 국방력의 공백을 메우고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1949년 2월부터 만 18~25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일제시기에 군대 경력자가 가장 많은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군대를 급속히 확편하려고 구상했다.

모병대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합격의 기준은 군대에 복무하기에 적합한 신체조건과 노동당이 선호하는 계급·경력·사상이었다. 건강한 신체와 친노동당적 사상은 모두 합격의 필수조건이었다. 북한 당국은 국가수립 전후에 중농·지주·청우당원·월남민가족 등을 모병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노동자와 빈농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입대시켰다. 이들은 국가수립 이후에 노동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빈농계급을 집중적으로 입대시킴으로써 인민군의 정체성을 친노동당적이며 계급적 군대로 재편하려고 구상했다.

국가수립 전후 북한 당국은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모병제를 표방했지만 실제 모병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할 병력수를 할당했다. 이 모병제는 분명히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병역제도가 특정 나이의 모든 공민(公民)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는 자발성과 강제성이 공존하는 ‘할당제가 부과된 모병제’였다.

주제어 : 북한군, 북조선노동당, 민족보위성, 징병제, 한국전쟁

(원고투고일 : 2024. 9. 10.,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 1. 머리말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는 근대국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근대국가는 전근대국가와 달리 군대를 특정한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문제로 취급했다. 국가는 국민에게 헌법·복지·자유를 약속했고, 국민은 이에 대해 스스로 군대에 입대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책임을 짊어졌다. 보편적인 병역은 참정권의 부여와 함께 생겨났다. 근대국가의 국민은 병역이라는 의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았다.<sup>1)</sup> 국민개병제도의 본질은 국민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동원하는 징병제(徵兵制)이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형성은 국민의 탄생, 국민개병제도와 궤를 같이 한다.

북한은 2003년까지 형식상 모병제(募兵制)에 해당하는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202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군사복무제(全民軍事服務制)를 시행하고 있다.<sup>2)</sup> 이 같은 북한의 병역제도 역시 근대국가의 수립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북한의 근대국가는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되었고 군대는 1948년 2월 8일에 창설되었다. 북한의 병역제도는 국가가 수립되면서 공식화되었지만 서구의 병역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서구의 근대적 병역제도는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계급과 국민국가의 형성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병역

1) 토마스 퀴네 외 저, 조정식·박은주 옮김, 『남성의 역사』, 서울: 솔출판사, 2001, 119~121쪽.

2) 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3, 116쪽.

제도는 일제의 식민지적 근대와 소련이라는 사회주의적 근대의 영향 아래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편 북한의 병역제도는 한반도가 해방과 동시에 분단되었다는 시대적 상황과 직결되어 형성되었다. 한국인의 국가수립과정<sup>3)</sup>은 1945년 8월에 연합국의 분할점령으로 인해 남과 북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북한의 병역제도는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수립을 위해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현했고 한반도의 무력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축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주제는 이처럼 분단국가의 수립과 6·25전쟁의 기원이라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6·25전쟁 이전 북한의 병역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제의 의미에 비해 적은 상황이다. 북한의 병역제도를 단독 주제로 다룬 연구는 서홍석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1949년 5월에 북한 내각이 채택한 군사 관련 결정을 분석한 결과, 북한 당국이 원칙적으로 지원제를 유지했고, 병력충원과 군사원호사업이라는 이중적 동원구조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규모 병력모집의 결과, 군 내부에 충성도가 낮은 인물이나 반체제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보위부와 문화부중대장제도를 설치했다고 평가했다.<sup>4)</sup> 서홍석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선행연구는 북한군의 역사와 6·25전쟁의 전사(前史)를 연구하면서 부분적으로 북한의 병역제도를 다루고 있다.<sup>5)</sup>

3) 이 글에서 국가수립은 영토-국민주권으로 이루어진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4) 서홍석, 「조선인민군 충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 『역사와현실』104호, 한국역사연구회, 2017, 373~410쪽.

5)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192쪽;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159쪽;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2, 서울: 나남, 1997, 755~756쪽.

북한의 병역제도는 아직도 해명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선행연구는 병역제도를 정규군의 창설과정이나 확군(擴軍)과정과 연관해 분석하지 못했다. 북한의 병역제도는 기본적으로 정규군을 창설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정규군 창설 이후에는 확군을 목표로 실시되었다.<sup>6)</sup> 다음으로 선행연구는 병역제도가 각 지역에서 실제로 시행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황해도 서흥군의 사례가 분석되었지만 그 연구내용은 구체적인 지역적 실태를 드러내기보다 일반적인 모병과정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sup>7)</sup>

이 글의 목적은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를 재구성하고 그 구체적인 모병실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첫째, 이 글은 북한의 모병정책이 전쟁준비과정·확군과정과 어떤 연관 아래 시행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문제가 군사적 문제와 결합하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둘째, 이 글은 모병정책을 국가수립을 기점으로 1948년 7월과 1949년 2월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이 글은 황해도 서흥군의 모병사례를 통해 북한의 모병정책이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명하기 위해 주로 미군 노획 문서(鹵獲文書) 중에서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생산한 「인민군대 모집에 관한 서류」를 발굴해서 활용했다. 이 서류와 서류철은 선행연구에서 일부분 활용되었지만 대부분의 문서는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았다. 이 자료는 황해도인민위원회와 황해도 서흥군인민

6) 북한은 1949년 7월에 중국에서 2개 조선인사단을 넘겨받아 확군했다. 개전 당시 북한군은 7개 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보병사단의 28.6%에 해당한다. 1949년 이후 북한군의 확군과정은 병역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앞으로 연구되어야할 과제이다.

7) 서흥석, 앞의 논문, 2017, 379~380쪽.

위원회에서 1948~1949년에 생산한 자료이며 내부적으로 “군비(軍秘), 극비(極秘)”로 관리된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 병역제도와 모병실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2.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일제 군경력자의 활용

### 가.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모병정책

북한의 병역제도는 1948년 9월에 국가가 수립되면서 구축되었지만 병역제도는 국가수립 이전부터 형성되었다. 그 이유는 1946년 8월부터 북한지역에 경찰과 구별되는 군대가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 8월에 향후 보병사단의 모체가 되는 보안간부훈련소(保安幹部訓練所) 제1·2·3소를 창설하고, 얼마 후 보안간부훈련소를 내부적으로 제1경보병사단·제2경보병사단·제3독립혼성여단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모든 보안무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1946년 8월 15일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창설했다.<sup>8)</sup>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보안간부훈련소에 청년들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약 9개월 동안 군사지휘능력을 제고하고 신병들을 교육·훈련시켜 군인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대대부는 1947년 5월 17일에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로 개편되었다. 같은 날 보안간부훈련소의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解放과 建軍),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680~682쪽.

공식적인 명칭도 “인민집단군 제1정보병사단·제2정보병사단·제3독립혼성여단”으로 변경되었다.<sup>9)</sup> 공식적으로 총사령부가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병부대는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증편되지 않았다. 북한정치세력이 총사령부를 조직하면서 군대를 증편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정치세력은 약 1년 6개월 동안 군사지휘기관과 보병부대를 편성해 운영하면서 창군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이들은 1948년 2월 8일에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을 창설했다. 창설 당시 북한군은 육군만 보유하고 있었고 공군과 해군은 보유하지 못했다. 북한군의 창설과 동시에 보병부대도 기존의 정보병사단 편제를 넘어서 각각 제1보병사단·제2보병사단·제3혼성여단으로 증편되었다.<sup>10)</sup> 북한의 군대는 ‘조선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면서 처음으로 증편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이 군대의 증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점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진행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10월에 최종 결렬되었고 이로써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은 무산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은 이때부터 단독정부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북한군 창설을 준비했다. 북한군 창설은 모스크바의 허가를 받아 소련군사령부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북한정치세력과 소련군사령부는 창설식의 절차문제와 참석자·발언자의 선정문제까지 긴밀히 협의했다.<sup>11)</sup>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682쪽;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秘史』中卷, 서울: 兵學社, 1977, 30~31쪽.

10) 장준익, 앞의 책, 1991, 87쪽.

11) 전현수 역,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서울: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47~48쪽.

북한의 병역제도는 해방 이후에 기본적으로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시작되었다. 북한지역에서 모병사업은 국가수립을 전후해 크게 세 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째, 북한정치세력은 북한군을 정식으로 창설하기 위해 군대를 증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48년 1월부터 북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모병사업이 실시되었다. 즉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월 20일에 「지시 제9호」로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대원모집 임시조치에 관하여」를 각 지방인민위원회에 하달했다. 둘째, 북한정치세력이 전국적 규모로 모병사업을 추진한 두 번째 시기는 1948년 7월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7월 3일 「비밀지시 제50호」를 각 지방인민위원회에 하달해 “인민군대 대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셋째, 전국적 규모로 모병사업을 추진한 세 번째 시기는 1949년 1월이다. 북한 정부는 1949년 1월 30일경 각 지방인민위원회에 다시 한번 “인민군대 대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수립 전후에 실시된 모병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948~1949년 북한군 모병사업 현황<sup>12)</sup>

지시일	문서번호	문서제목	문서내용	모병대상자	모병기간
1948. 1.20	북조선인민위원회 지시 제9호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대원모집 임시조치에 관하여	확인 안됨	확인 안됨	확인 안됨
1948. 7.3	북조선인민위원회 비밀지시 제50호	인민군 신대원 모집에 관하여	인민군총사령부 관하 각 부대의 결원된 병사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신대원을 모집	· 만18~24세 · 1924년 7월~1930년 7월생 · 가급적 노동자 성분 50%	1948. 7.10~8.10

12) 내각수상 김일성, 「조선인민군대 전사용모사업에 관하여」(1949.6.20), 서흥군인민위원회 군사등록계, 『<軍秘> 1949년도 일반서류철』,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6, Item 21(이하 출처 생략); 서흥군인민위원장, 「<極秘> 人民軍 新隊員 募集에 關하여」(1948.7.10) · 「<극비> 人民軍隊隊員 募集事業에 關하여」(1949.2.1),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5, Item 44(이하 출처 생략).

지시일	문서번호	문서제목	문서내용	모병대상자	모병기간
1949. 2.1	황해도인민위원회 비밀지시 제 11호	인민군대 대원 모집 사업에 관하여	민족보위성에서 인민군대 대원을 모집	· 만18~25세 · 1924년 2월~1931년 1월생 · 노동자·빈농민	1949. 2.1~2.28

국가수립 이전에 추진된 모병사업은 공통적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정권기관이 추진했다. 정권기관이 모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보하고 있어야 할 통계가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이름·연령·성별·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이다. 북한정치체력은 이미 1946년 8월 9일부터 18세 이상의 전체 주민에게 공민증(公民證)을 발급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공민증에는 개인의 성명·연령·성별·성분·출생지·현주소·직장·직업·가족명부(18세 미만)·민족 등이 기재되었다. 각 시·군인민위원회에는 공민증계가 신설되었고, 공민증계에서는 「공민증등록부」라는 서류를 제작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sup>13)</sup>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은 개인별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지역에서 모병사업을 추진한 시기는 1948년 1월 20일이다. 1월에 군인을 모병한 것은 그해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을 정식으로 창설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모병 주체는 정권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였다. 북한 당국은 당시에 군인 모병을 위장하기 위해 이미 없어진 보안간부훈련대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모병사업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대원”이라는 명칭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1948년 1월 시점의 정확한 명칭인 북조선인민집단군사령부는 창설 당시 보병부대 등 육군만

13)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公民證에 관한 決定書」(1946.8.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825~829쪽.

관할했고, 공군과 해군은 관할하지 않았다. 따라서 1948년 1월의 모병사업은 북한군 창설에 발맞추어 육군의 편제상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월의 모병사업과 달리 7월에 실시한 모병사업은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병사업은 ‘조선인민군총사령부’가 관할하는 모든 부대의 편제상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모병 주체는 정권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였고 모병 지역은 북한 전체지역이었다. 이 모병사업은 만 18~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추진되었다. 특히 모병연령은 심사과정에서 엄격히 지켜졌다. 황해도 서흥군에 거주하는 우제순은 빈농 성분으로 신체검사를 통과했으나 나이가 부족해 불합격되었다. 당시 모병연령은 1930년 7월생까지였는데 그의 생일은 1930년 9월 25일이었다. 면 심사원은 그에 대한 심사결과서에 “년령이 2개월 부족함”이라는 심사의견을 남겼다.<sup>14)</sup>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가급적” 노동자 성분을 50%로 모집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병사들의 계급구성에서 노동자성분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1948년 7월의 모병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첫째, 9월로 예정된 정부수립에 맞추어 전체 북한군 부대를 완편하기 위한 조치였다. 둘째, 부대를 증편하거나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조치였다. 민족보위성은 1948년 7월부터 추진된 모병사업을 기반으로 9~10월에 1개 여단을 증편하고 1개 여단을 새로 창설했다. 제3독립혼성여단은 1948년 9월 9일 강원도 원산에서 제3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제3사단은 10월에 들어서 1개 연대가 새로 편입되고 장비가 보충되면서 완편사단이 되었다.

14)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우제순)」(1948.7.20),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관한書類』.

예하에는 제7·8·9보병연대와 포병연대가 배속되었다.<sup>15)</sup> 또한 민족보위성은 1948년 10월 15일에 평남 대동군에서 제4독립혼성여단을 창설했다. 제4여단은 3개 보병대대, 1개 포병대대, 5개 직할대대를 보유했다.<sup>16)</sup>

다음으로 북한 당국은 1949년 2월 1일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모병사업을 추진했다. 모병 주체는 정권기관인 민족보위성이었고 모병 지역은 북한 전체지역이었다. 이 모병사업은 1948년 7월의 모병사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추진되었다. 그러나 모병연령은 기존의 24세에서 25세로 확대되었다. 1948년 7월의 모병사업은 “신대원”을 모집해 완편과 확군을 동시에 추진했음에 비해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은 “대원”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확군을 추진했다. 또한 이 모병사업은 1948년 7월과 달리 출신성분이 “노동자·빈농민”인 청년들만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노동자·빈농을 증편할 부대나 신설할 부대의 중심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나아가 민족보위성은 “이남가족 및 친척관계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로 하되 로동성분을 30% 이상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sup>17)</sup>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은 1948년 11월부터 실시된 소련군의 철수와 연관되어 추진되었다. 소련군은 1948년 12월 16일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완료했다. 그리고 1949년 1월 12일에 슈티코프가 “조선주차 소련특명전권대사”로 북한에 부임했다.<sup>18)</sup>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1949년 1월부터 무력통일 구상을 직접 피력하기 시작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1949년 1월 17일에 북한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688~689쪽.

16) 장준익, 앞의 책, 1991, 103쪽.

17) 서흥군인민위원장, 「〈극비〉 인민군대 대원모집사업에 대하여」(1949.2.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18) 勞動省, 『로동』제1호, 평양: 勞動省, 1949.3.15, 44~49쪽.

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를 직접 만나 소련과 「상호우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sup>19)</sup> 그리고 북한 당국은 2월부터 슈티코프와 무력통일 구상과 원조조약 체결문제를 협의했고, 이 문제를 스탈린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 3월 5일에 모스크바를 방문했다.<sup>20)</sup> 즉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은 북한군을 확편함으로써 소련군의 공식 철수로 발생하는 국방력의 공백을 메우고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 나. 북한의 모병연령과 일제 군경력자의 활용

국가수립 이전인 1948년 7월의 병역제도와 국가수립 이후인 1949년 2월의 병역제도는 둘 다 모병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48년 7월과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시기 모병사업은 공통적으로 모병주체가 정권기관이며 모병기간이 1개월이다. 즉 모병사업은 주민들을 통치하는 정권기관이 주도했고, 전체 지역에서 한 달 안에 신속히 추진되었다. 두 시기 모병사업의 신체검사 기준도 동일하다. 신체검사 통과기준은 키 150cm 이상, 가슴둘레 80cm 이상, 시력 0.8 이상, 청력 1m 거리였다. 이와 함께 질병에 대한 사항도 있어서 색맹이 아니면서 전염병·질병·성병이 없는 자만 입대할 수 있었다. 다만 1949년 2월의 모병사업 때는 신체검사 통과기준에 몸무게(48kg 이상)가 추가되었다.

두 시기 모병사업의 차이점도 있다. 먼저 모병대상자에 대해 1948년 7월에는 “가급적” 노동자 성분을 50%로 모집하라고 지

19) 「슈티코프→소련 외무부」(1949.1.17),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10쪽.

20) 「북한정부대표단과 스탈린의 대화록」(1949.3.5),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탈리아 바자노바, 위의 책, 1996, 13~14쪽.

시켰으나, 1949년 2월에는 “노동자·빈농성분으로서 사상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당국은 북한군 창설 이후에 먼저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충원했고 국가수립 이후에는 노동자·빈농계급만 충원했다. 이들이 노동자를 먼저 충원한 것은 노동자계급이 정권의 핵심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계급구성상 노동자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국가수립 이후에 노동자·빈농계급만 충원한 것은 이들을 군대의 핵심계급으로 부상시키려는 의도였다.

다음으로 두 시기 모병사업은 모병연령이 다르다. 1948년 7월에는 만 18~24세까지 모집했지만 1949년 2월에는 만 18~25세까지 모집했다. 북한 당국이 모병하려 한 청년들의 나이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북한 당국이 만 18세부터 군사적령자에 포함시킨 것은 만 18세가 정부수립 이전부터 정권기관에서 인정하는 공민(公民)이자 성인(成人)의 기준 연령이었기 때문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9일부터 전체 주민에게 공민증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공민의 기준 연령이 만 18세였다.<sup>21)</sup> 따라서 북한에서는 1946년 8월부터 만 18세 이상에게만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었다.

둘째, 북한이 설정한 모병연령은 일제시기 징병제와 관련되어 있다. 1948년 7월의 모병사업은 만 18~24세(1924~1930년생)을 대상으로,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은 만 18~25세(1924~1931년생)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일제가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44~1945년이다. 이때 징병 대상자는 20세였다.<sup>22)</sup> 출생

21)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公民證에 關한 決定書」(1946.8.9),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7, 824~825쪽.

22) 일제는 별도로 조선인에 대한 병역법을 제정하지 않고 일본 본토의 병역법을 조선인에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징병제를 실시했다. 「第3章 第23條」, 『法律 第47號 兵役法』(昭和2年 3月 31日), 7쪽,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자료번호: A03021636299).

년도로 보면 1924년생과 1925년생이다. 일제는 1943년 10월 1일부터 징병 적령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는데 적령자(1924년생) 266,643명 중에서 254,753명(96%)이 신고했다. 징병 신고자들은 1944년 4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최초로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적령자 중에서 94.5%가 검사받았다. 징병검사를 통해 합격자로 판정된 사람들은 1944년 9월부터 입대했다. 입영 인원은 9월에 15,936명, 10월에 5,922명, 11월에 1,886명, 12월에 6,583명으로 총 30,327명이었다. 1945년도에 입대한 1925년생의 인원은 알 수 없다.<sup>23)</sup> 또한 일제는 1943년 8월 1일부터 해군특별지원병 제도를 신설해 처음으로 조선인들을 해군으로 동원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교련·무도·행군·해상훈련 등을 교육받고 해군에 배치되었다.<sup>24)</sup>

1924년생(甲子年生)과 1925년생(乙丑年生)은 조선인들 중에서 최초로 의무적 징병제에 따라 일본군에 입대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단일 연령층 중에서 군대 경험자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었다. 또한 이들은 1944년 이전에 입대한 지원병과 달리 군대 근무기간이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영향을 거의 체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가장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이수했기 때문에 북한군 신병으로도 적합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1924~1925년생을 중심으로 모병대상을 설정한 것은 이들의 일본군 입대 경력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1949년 2월에 실시한 모병사업의 모병 연령이다. 이 시기 모병연령을 보면 최저 연령은 만 18세로 기존과 동일한 반면에 최고 연령은 기존의 만 24세에서 만 25세

23) 최유리, 「일제말기 징병제 도입의 배경과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1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406쪽.

24) 표영수,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사훈련 현황」, 『숭실사학』30호, 숭실사학회, 2013, 236쪽.

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1948년도의 만 24세와 1949년도의 만 25세는 모두 1924년생(갑자년생)이다. 즉 북한 당국은 군대 경력자가 가장 많은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군대를 급속히 확편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1924~1931년생을 모병대상으로 설정한 것도 일제시기 군사훈련과 연관되어 있다. 첫째, 1928~1931년생 중 상당수의 청년들은 일제가 1929년에 처음 창설한 청년훈련소(靑年訓練所)에 대규모로 입소했던 사람들이다. 청년훈련소는 일제가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실업교육·공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민학교에 설치한 훈련소이다. 입소 대상자는 13~22세의 청년 중에서 국민학교를 수료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의무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1944년부터 청년훈련소를 “건병(建兵)육성의 기초”로 설정하고 입소를 거의 의무화했다. 훈련소의 운영방향도 사격·총검술·전투교련 등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1944년 당시에 2,534개의 청년훈련소에서 약 21만 명의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 특히 1927~1931년생은 1944년부터 의무적으로 청년훈련소에 입소했던 연령층으로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이수한 청년들이었다.<sup>25)</sup>

실제로 1948년 7월에 북한군에 지원한 청년 중에서 일제시기에 청년훈련소를 수료한 인물이 있다. 황해도 서흥군 내덕면에 거주하는 조근창은 1924년생으로 1939년 3월에 내덕소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43년 3월 5일부터 “황해도 서흥 내덕면 청년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는 약 2년 동안 이곳에 다니면서 훈련을 받다가 1945년 8월 14일에 훈련에서 해제되었다.<sup>26)</sup> 서흥군 을

25) 신주백, 「일제말기 조선인 군사교육(1942.12~1945)」, 『한일민족문제연구』9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5, 166~168쪽.

26) 조근창, 「履歷書(조근창)」(1948.7.29),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리면에 거주하는 황용득은 1927년생으로 1943년 2월에 송월국민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이력서」에 1943년 3월부터 “송월인민학교(국민학교)에서 2년간 청년훈령(청년훈련) 당겨슴”이라고 기재했다.<sup>27)</sup>

둘째, 1924~1928년생 중에서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일제가 1942년 12월부터 설치한 조선청년특별연성소(朝鮮靑年特別鍊成所)에 의무적으로 입소했던 사람들이다. 조선청년특별연성소는 일제가 향후 군인과 군무자로 동원할 청년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훈련소이다. 17세부터 21세 미만의 조선인 남성 중에서 국민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연성소에 입소할 의무가 있었다. 이들은 1년 동안 400시간의 훈육·학과 교육, 200시간의 교련·근로 교육을 받았다. 조선총독부는 연성소에서 주로 입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1944년도 징병적령자에 해당되는 조선인을 훈련시키기 위해 시설을 확대했다. 조선청년특별연성소는 1944년까지 조선에 2,712개소가 설치되었고 1943년까지 103,000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연성소에서 훈련받았다. 1945년도에는 12만 명을 대상으로 2,923개소에서 60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다.<sup>28)</sup>

이상의 사실을 정리해보면 1924~1928년생 중 국민학교 미졸업자는 조선청년특별연성소에서 1년 동안 600시간 이상의 입영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다. 1927~1931년생 중 국민학교 졸업자는 1~2년 동안 청년훈련소에서 사격·총검술·전투교련 등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청년들이었다. 북한 당국은 주로 일제시기에 이미 1~2년 동안 기본적인 군사훈련이나 입영 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모집함으로써 신병들의 교육·훈련기간을 단축하려고

27) 황용득, 「履歷書(황용득)」(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28) 대상자를 정확히 서술하면 1942년 12월에 실시된 제1차년도 훈련은 1923년 12월 1일생부터 해당된다. 신주백, 앞의 논문, 2005, 169~171쪽.

계획했다. 그리고 일본군 경력이 있는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이들을 신병을 선도하는 집단으로 육성하려고 구상했다. 이 같은 모병연령의 설정은 북한군을 급속히 확편하기 위한 장치였다.

### 3. 국가수립 전후 모병사업의 실태와 모병 기준

#### 가. 1948년 7월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모병사업과 신체적·사상적 기준

그렇다면 국가수립 전후에 모병사업은 각 지역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현재까지 1948년 1월에 실시된 모병사업은 지시문서의 제목만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1948년 7월과 1949년 2월에 실시된 모병사업은 지시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군·면단위에서 모병사업을 집행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황해도 서흥군의 사례를 통해 북한 당국이 국가수립 전후에 실시한 모병사업의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해 보자.

먼저 북한 당국이 1948년 7월에 실시한 모병사업은 각 지역별로 모집인원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할당제(割當制)로 진행되었다. 1948년 7월 8일 당시 황해도 서흥군의 남성 인구는 6,680명이었는데 모집할당인원은 112명(남성 대비 할당인원 1.68%)이었다.<sup>29)</sup> 1948년 1월 당시 북한의 전체 인구는 9,331,540명이었고 남성은 4,642,363명이었다.<sup>30)</sup> 서흥군의 남성 대비 할당인원을

29) 황해도인민위원장, 「人民軍 新隊員 募集에 關하여」(1948.7.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30) 「주 북조선 소련민정청 3개년사업 총결보고서」, 김광운 편, 『북조선실록』1권, 서울: 코리아데이터프로젝트, 2018, 457쪽.

북한의 전체 남성인구에 적용해 보면 1948년 7월에 전체 지역에 할당된 모병 인원은 약 77,000~78,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군 보병사단의 모델이 된 소련군 근위보병사단의 편제병력은 10,670명이다.<sup>31)</sup> 따라서 이 할당인원은 7개 보병사단을 창설할 수 있는 인원이다.

그러나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할당받은 인원만큼 모집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았다. 황해도인민위원장은 1948년 7월의 모병사업에서 면심사위원회와 시·군심사위원회에 공통적으로 “할당수자 이상을 초과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sup>32)</sup> 도인민위원회가 할당인원을 초과 확보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전에 실시한 모병사업의 경험상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병사업은 도인민위원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업 초기에 모집인원이 할당인원보다 적었다. 7월 19일 당시 서흥군에는 111명이 할당되었으나, 모집인원은 93명에 불과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8년 7월 13일 경에 새로운 「모병 규정」을 하달했다. 이전까지 모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규정에 따라 상부에서 지불했다. 그러나 새로운 모병 규정에는 군(郡)심사위원회에서 불합격자가 15% 이상이 발생하면 해당 면인민위원회가 모든 소요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었다.<sup>33)</sup> 하지만 소요경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심사과정을 통과한 합격자는 할당인원보다 적었다. 1948년 7월 25일 당시 서흥군의 할당인원은 121명으로 증가했

31)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7, 309; 331쪽.

32) 황해도인민위원장, 「〈극비〉 人民軍 新隊員 募集에 關하여」(1948.7.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33) 서흥군인민위원장, 「〈祕〉 人民軍 新隊員 募集에 關하여」(1948.7.13),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다. 각 면에서 실제로 모집한 인원은 149명이었으나, 이 중에서 군심사를 통과한 합격자는 98명에 불과했고 불합격자가 51명에 달했다.<sup>34)</sup> 군심사위원회에서 불합격자가 34%나 발생했으므로 모병사업에 지출된 경비는 모두 면인민위원회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할당인원이 121명인데 비해 합격자는 98명이었으므로, 실제 모병비율은 81%에 불과했다.

각 지역에서 실시된 모병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은 지방인민위원회의 모병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948년 7월에 황해도에서 실시된 모병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1948년 7월 황해도의 모병사업<sup>35)</sup>

기간	모병절차	작성서류	담당자
7.10-11	모집지시 전달, 모집사업 조직	확인 안됨	면당위원장, 면인민위원장, 분주소장, 면민청위원장
7.11-12	면심사위원회 조직, 세포위원장 소집	확인 안됨	면당위원장
7.12-13	세포회의 소집, 모집계획 수립	확인 안됨	세포위원장
7.19	면당에서 지원자명단· 통계 작성, 심사계획 수립	지원자명단·통계표	면당위원장, 민청위원장, 여맹위원장
7.20	면심사 실시 및 총결	합격자명단·통계표, 합격자추천서, 불합격자통계표	면심사위원회 : 면인민위원장, 분주소장, 면당위원장, 면민청위원장
7.21-22	시군심사 실시 및 총결	합격자명단·통계표, 합격자추천서, 불합격자통계표	시군심사위원회 : 시군인민위원회 서기장·내무서장, 시군당 조직부장, 시군 민청위원장
7.23-8.4	도심사 실시 및 총결	합격자명단·통계표, 합격자추천서, 불합격자통계표	도심사위원회 : 도인민위원회 서기 장·간부부·내무부, 도당 간부부, 도민청 조직부

34) 서흥군인민위원장, 「人民軍 新隊員 募集에 關하여」(1948.7.13),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35) 황해도당 위원장, 「인민군대·수상보안간부학생·교도대원 모집에 관하여」(1948.7.6),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황해도의 모병사례를 보면, 각 지역의 모병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정권기관(인민위원회), 당(노동당), 사회단체(민청·여맹)라는 세 주체가 참여했다. 모병사업을 주도한 주체는 노동당이였다. 노동당은 면(面)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집계획·심사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자명단·통계표를 작성했다. 지원자들은 「이력서」와 「추천서」를 제출했는데 「추천서」는 지원자가 소속된 민청과 면당으로부터 받았다. 심사과정은 면심사위원회, 시군(市郡)심사위원회, 도(道)심사위원회라는 3단계를 거쳤다.

먼저 면단위의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병사업은 징집제(徵集制)가 아니라 지원제(志願制)로 추진되었다. 모병지원자는 반드시 「이력서」와 「추천서」를 각각 1부씩 제출했다. 「추천서」는 주로 지원자가 소속된 북조선민주청년동맹과 북조선로동당의 지방조직 위원장이 작성했다. 「추천서」에는 신상정보와 함께 “사상, 책임감, 가정형편”이 기록되었다. 가령 황해도 서흥군 도면에 거주하는 리기봉의 「추천서」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서흥군 도면위원장이 작성했고, “사상”란에는 “민주청년으로써 자기가 속한 초급단체에서 열성적으로 학습회 참가하며 민주과업을 달성하기에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기재했다. 「이력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했고 출신·사회성분, 정당, 학력, 경력을 기재했다.<sup>36)</sup>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평소에 지원자를 잘 아는 정당·사회단체의 책임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일차적으로 대상자의 사상·언행·계급을 검증했다. 그리고 「이력서」를 제출받아 대상자의 학력과 경력이 군인으로 적합하지 확인했다.

둘째, 1차적 모병 기준은 신체적 조건이었다. 면심사위원회는 모병지원자가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신체의 조건은 나이였다.

36)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서흥군 도면위원장, 「추천서(리기봉)」(1948.9.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1924~1930년 사이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해도 군대에 갈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김운상은 빈농 출신으로 정치적 각성 면에서 “기본적 요해”를 하고 있었으나 1931년생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격되지 않았다. 1948년 7월의 모병 사업 당시 17세였던 고덕빈도 모병사업에 지원했으나 “나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sup>37)</sup>

신체조건이 첫번째 모병 기준이었기 때문에 모병지원자는 모두 면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군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신체검사를 위해 반드시 “책임감있는 의사를 선정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신체검사는 각 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했다. 서흥군 서흥면에 거주하는 리영택은 서흥진료소장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았고 서흥군 신막면에 거주하는 장은근은 신막교통병원 의사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검사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sup>38)</sup>

모병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항목은 9개로 생활기호(술·담배·운동), 체중, 신장, 흉위(胸圍), 시력, 청력, 색신(色神), 사지(四肢), 흉부(胸部) 등이다.<sup>39)</sup>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한 이후에 “적당, 부적당”으로 판정했다. 신체검사의 합격자 기준은 키 150cm 이상, 가슴둘레 80cm 이상, 시력 0.8 이상, 청력 1m 거리이다. 이와 함께 질병에 대한 검사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었다. 모병지원자는 색맹이 아니면서 전염병·질병·성병이 없는 자만 합격할 수 있었다.<sup>40)</sup>

37)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김운상·고덕빈)」(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38) 면인민위원회, 「身體檢査書(리영택)」(1948.7.19)·「身體檢査證(장은근)」(1948.9.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39) 면인민위원회, 「定期身體檢査表(이선호)」(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40) 황해도당위원장, 「인민군대·수상보안간부학생·교도대원 모집에 관하여」(1948.7.6),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신체검사 결과는 가장 중요한 합격기준이었다. 모병지원자는 계급·사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신체검사에서 1개 항목만 부적합해도 합격되지 못했다. 안세영은 빈농 출신으로 노동당원이자 민청 덕성리 초급단체 책임자였다. 그는 모병 심사원으로부터 “초급단체 책임자, 빈농, 사상 견고”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신체조건이 부족해 불합격 처리되었다.<sup>41)</sup> 리만재는 정치사상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몸이 약하고 적록색맹(赤綠色盲)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sup>42)</sup> 또한 질병이 있는 지원자도 불합격되었다. 오명식은 1930년생의 빈농 출신이었는데 신체검사 결과 “신체상 자격 부족, 피부병(웁)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sup>43)</sup>

셋째, 2차적 모병 기준은 사상적 조건이었다. 심사위원회는 모병지원자가 군대에 복무하기에 적합한 계급·경력·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신체검사 결과 질병이 없고 건강하더라도 사상의식이 “불량”하거나 정치적 수준이 떨어지는 청년은 불합격되었다. 조근창은 노동당원으로 민청보위대 소대장이었지만 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사상방면에서 불량”하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 이석만은 빈농 성분으로 여관 종업원이었는데 “정치적 수준 없음”이라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sup>44)</sup> 또한 지역의 모병과정에서는 모병대상자의 평소 행태도 심사대상이었다. 북조선로동당 황해도당은 1948년 7월에 모병사업을 하달하면서 각 지역

41)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안세영)」(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42)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리만재)」(1948.7.20),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43) 면인민위원회, 「履歷書(오명식)」·「검열요강(오명식)」(1948.7.19),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44)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조근창·리석만)」(1948.7.20),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에서 대상자의 평소 행태를 조사해 “건달배의 혼입을 방지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sup>45)</sup>

이상에서 살펴본 면(面)심사를 통과한 합격자는 군(郡)심사위원회에서 제2차 심사를 받았다. 군심사위원회는 주로 지원자의 계급·경력·사상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그런데 면심사에서 합격했더라도 군심사에서 불합격하는 지원자가 적지 않았다. 그 불합격 이유는 주로 정치의식 때문이었다. 심사 당시 19세였던 민영구는 여관 고용노동자로 빈농 출신의 국문해독자였다. 그는 면심사 당시 신체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평정서」에서 “사상이 견실하고 인민군대 생활을 희망하며 국가 견지에 투쟁심이 강함”이라는 평정을 받고 합격했다. 그러나 그는 군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 이유는 “헌법에 대한 문제, 남북조선지도자협의회 결정 중심내용, 선거사업”에 관한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46)</sup>

일부 지원자는 면심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군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서흥군 신막면에 거주하는 최경성은 면심사 이후에 신막교통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 모병 당국이 확인한 질병은 6개였다. 병원장 방칠현은 「건강진단서」에 “우자는 화류병(花柳病), 폐결핵(肺結核), 나병(癩病), 도라호무(トラホーム, Trachoma, 전염성 만성결막염), 정신병, 기타 전염성 피부질환이 무(無)함을 진단함”이라고 기재했다.<sup>47)</sup> 당시 지원자 중에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2차 건강진단은 면심사 결과 환자일

45) 황해도당 위원장, 「인민군대·수상보안간부학생·교도대원 모집에 관하여」(1948.7.6),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관한書類』.

46) 면인민위원회, 「定期身體檢査表(리영택)·履歷書(리영택)·「검열요강(리영택)」(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관한書類』.

47) 新幕交通病院, 「健康診斷書(崔璟成)」(1948.9.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관한書類』.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1948년 7월의 모병지원자 중에는 일본군에서 복무한 인물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1924년에 서흥군 세평면에서 태어난 최용성은 1945년 3월 10월에 일본군에 징집되었다. 그는 일본 시즈오카현(静岡県)에 있는 일본군 제47부대에서 8개월 동안 군인으로 복무했다. 최용성은 1945년 9월 5일에 징병에서 해제되어 귀국했다. 그는 귀국 이후에 북조선로동당 서흥군 농촌 제1세포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1948년 7월 20일에 북한군에 지원했다. 1924년에 소사면에서 태어난 김은덕도 1945년 3월 10일에 일본군에 징집되어 시즈오카현에서 근무했다. 그는 1945년 9월 12일에 귀국해 농사를 짓다가 1948년 7월 19일에 북한군에 지원했다. 1924년에 내덕면에서 태어난 안세영은 1944년 7월 16일에 일본군에 징집되어 일본 큐슈(九州)지방 나가사키현(長崎縣)에 배치되었다. 그는 해방 이후 귀국해 북조선민청 덕성리 초급단체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1948년 7월 30일에 북한군에 지원했다.<sup>48)</sup>

#### 나. 1949년 2월 민족보위성의 모병사업과 합격기준의 강화

북한 당국은 국가수립 이후인 1949년 2월에 다시 한번 모병 사업을 추진했다. 1948년 7월의 모병사업은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데 비해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은 민족보위성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다. 민족보위성에서 작성한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모집연령은 만 18세 이상 25세까지(1924년 2월생~1931년 12월생)였다. 모집대상자는 노동자·빈농민 출신

48) 면인민위원회, 「검열요강(최용성)」·「간부리력서(최용성)」·「자서전(김은덕)」·「리력서(김은덕)」·「履歷書(안세영)」(1948.7),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관한書類」.

으로 사상적으로 믿을 수 있으며 신체가 건강한 자였다. 모집기간은 1949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이었다. 1949년 2월의 모병사업도 1948년 7월의 모병사업과 동일하게 할당제로 추진되었다. 북한 당국은 1948년 7월에 실시했던 모병사업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을 진행했다. 즉 군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합격자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에서는 “인원에만 국한하여 충당하려는 경향을 일소하고 면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책임인원을 초과할 것”을 지시했다.<sup>49)</sup> 황해도 서흥군의 경우 노동자성분 23명과 빈농성분 47명 등 총 70명이 할당되었다.<sup>50)</sup>

그런데 지역별 할당제도는 실제 모병과정에서 두 가지 현상을 초래했다. 첫째, 하부 행정단위로 내려갈수록 실제로 모집해야 할 인원이 늘어났다. 1949년 2월에 황해도인민위원회에서 서흥군에 할당한 모집인원은 70명이었는데, 서흥군인민위원회에서 각 면에 할당한 모집인원은 110명으로 늘어났다. 둘째, 하부 행정단위로 내려갈수록 모집대상자의 출신성분이 강화되었다. 황해도인민위원회에서는 노동자·빈농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는데 서흥군인민위원회에서는 출신성분을 더욱 강화해 각 면마다 노동자를 30% 이상 확보하라고 지시했다.<sup>51)</sup>

그러나 1949년도 모병사업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방에서 모병지원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월 14일 당시 서흥군에서 북한군에 지원한 사람은 총 43명에 불과했고 이

49) 서흥군인민위원장, 「〈극비〉 인민군대 대원 모집사업에 대한 긴급지시」(1949.2.15),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0) 황해도인민위원장, 「〈극비〉 人民軍隊隊員 募集事業에 關하여」(1949.2.1),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1) 황해도인민위원장, 「人民軍隊 隊員 募集事業에 關하여」(1949.2.1); 서흥군인민위원장, 「〈극비〉 인민군대 대원 모집사업에 대하여」(1949.2.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중에서 합격자는 15명뿐이었다. 게다가 15명의 합격자는 모두 농민이었고 노동자는 전혀 없었다.<sup>52)</sup> 북한 당국은 이처럼 모병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자, 2월 중순에 각 지방인민위원회에 이 사업을 강력히 집행하라는 긴급 지시와 최후 경고를 하달했다. 긴급 지시의 내용은 모병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각 인민위원회가 절대적으로 후원할 것, 군인민위원회에서 각 면에 공작원을 다시 파견하여 책임인원(할당인원)을 무조건 확보할 것, 각 면에서는 면심사를 엄격히 실시해 책임인원을 초과할 것 등이었다.<sup>53)</sup> 그러나 할당인원은 4월에도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했다. 4월 당시 서흥군의 할당인원은 40명이었고 북한군 지원자는 166명이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4월 4일 현재 군심사 합격자는 145명(88%)이었고 도심사 합격자는 25명(15%)에 불과했다.<sup>54)</sup> 서흥군에 할당된 모병인원 70명에 비하면, 합격자는 겨우 35.7%에 불과했다.

1948년에 비해 1949년에 달라진 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1948년의 모병규정에 없던 모병대상자의 자격이 새로 추가되었다. 민족보위성은 1949년에 모병사업을 요청하면서 “이남가족 및 친척관계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로 하며, 노동성분을 30% 이상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sup>55)</sup> 둘째, 심사절차가 변경되었다. 1948년에는 신체검사를 면심사과정에서만 실시했으나 1949년에는 신체검사를 면심사과정에서 1회, 군심사과정에서

52) 서흥군인민위원장, 「인민군대 지원자 통계표」(1949.2.1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3) 서흥군인민위원장, 「〈극비〉 인민군대 대원 모집사업에 대한 긴급지시」(1949.2.15),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4) 서흥군인민위원장, 「〈비〉 人民軍隊 合格者 統計表」(1949.4.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5) 서흥군인민위원장, 「〈극비〉 인민군대대원 모집사업에 대하여」(1949.2.8),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합격자에 한해 1회를 각각 실시했다. 군심사와 군심사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들만 도심사에 회부되었다. 즉 1948년에 비해 1949년의 모병규정은 모병대상자의 계급성분·가족관계·신체자격이 한층 강화되었다.

1949년 2월의 모병사례를 통해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군심사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이다. 군심사는 면에서 합격자로 판정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면의 합격자는 지정된 날짜에 군소재지로 집결해 심사받았다. 군심사위원회는 면의 심사서류와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와 사상을 다시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불합격자가 나왔다. 불합격 이유는 주로 출신성분·신병(身病)·생활곤란이었다. 김종식은 지주 아들이라는 이유로 불합격되었고, 리응상은 천도교청우당 당원으로 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 또한 김영송은 신병(3세때 나무에서 떨어져 아프다) 때문에 불합격되었고 배인복은 가정형편이 곤란해 군대에 못가겠다고 진술해 불합격되었다.<sup>56)</sup>

특히 1949년 2월에 실시된 군심사의 결과는 북한의 병역제도가 국가수립 이후에도 모병제였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군심사과정에서 불합격한 모병지원자의 명단에는 불합격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불합격 이유를 살펴보면 개인사정으로 입대를 거부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이 입대를 거부한 이유는 “생활 곤란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으로 못가겠음, 다음에 가겠습니다” 등이었다. 나아가 면심사와 군심사를 거쳐 도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서흥군 신막면에 거주하는 리명식은 도심사에서 최종

56) 서흥군인민위원회, 「인민군대 지원자·합격자명단」(1949.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합격했으나 바로 북한군에 입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도심사에서 일개월 후 가겠습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sup>57)</sup> 즉 북한 당국은 1949년 2월 모병사업 당시 개인사정으로 입대를 거부하거나 연기한 사람들을 징집하지 않았다.

1949년 2월 모병사업에서는 군심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이 신체검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가 불합격되었다. 서흥군의 경우, 군심사 합격자 145명 중에서 군심사 이후에 진행한 신체검사에서 합격한 사람은 35명(24%)에 불과했다. 군심사 이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면심사 과정에서 신체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면심사에서는 키·체중·가슴둘레·시력·청력·전염병을 검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의료인력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체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신체검사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 서흥군 내덕면인민위원회의 경우 2명의 합격자를 군에 보고했지만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sup>58)</sup>

그 결과 군심사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신체기준이 미달되어 불합격되는 사람이 많았다. 군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지원자가 “체중 부족, 시력 부족, 청력 부족, 도리호무(Trachoma, 전염성 만성결막염), 피부병” 등이 확인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다. 또한 군의 신체검사 당시 “신병”을 이유로 불합격되는 사람도 많았다. 신병은 주로 신체검사나 건강검진으로 확인되지 않는 신체상 통증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화 불량, 10일 전부터 가슴이 아프다, 음식 먹으면 피가 나온다, 3년 전

57) 서흥군인민위원장, 「인민군대 지원자·합격자명단」(1949.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58) 내덕면인민위원장, 「人民軍隊 募集名單」(1949.2.13),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 募集에 關한 書類』.

부터 봄이 되면 복통이 있다, 나는 힘든 일하면 숨차다” 등이었다.<sup>59)</sup> 이 같은 증상은 모병지원자의 주장일 뿐이었지만, 인민위원회는 신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모병하지 않았다. 이것은 1949년 2월 당시 북한 당국이 모병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황해도 서흥군에서 1949년 2월부터 실시된 모병사업은 4월 4일에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황해도 서흥군에서 도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합격자는 총 41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출신성분·정당·학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949년 4월 4일 현재 황해도 서흥군의 모병사업 최종 합격자 통계<sup>60)</sup>

연령								출신성분			정당				학력		합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빈농	로동	중농	노동당	민주당	청우당	무소속	국해	소졸	
4명	10명	2명	9명	5명	3명	3명	5명	37명	3명	1명	11명	0	0	30명	26명	15명	41명
10%	24%	6%	22%	12%	7%	7%	12%	90%	7%	3%	27%	0	0	73%	63%	37%	100%

민족보위성에서 1949년 2월에 요청한 모병사업은 만 18~25세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서흥군의 최종합격자들의 나이를 보면, 최종합격자는 19~26세, 즉 만 18~25세로 모병규정에 맞게 모집되었다. 1949년 2월 당시 서흥군에는 노동자성분 23명(33%)과 빈농성분 47명(67%) 등 총 70명이 모병인원으로 할당되었다.<sup>61)</sup> 서흥군에 할당된 출신성분은 노동자가 33%, 빈농이

59) 서흥군인민위원장, 「인민군대 지원자·합격자명단」(1949.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관한書類』.

60) 서흥군인민위원장, 「인민군대 지원자·합격자명단」(1949.4),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관한書類』.

61) 황해도인민위원장, 「〈극비〉 人民軍隊隊員 募集事業에 關하여」(1949.2.1),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관한書類』.

67%였으나, 최종 합격자의 출신성분은 노동자 7%, 빈농 90%, 중농 3%였다. 북한 당국은 북한군 군인으로 노동자를 최대한 많이 모집하고 노동자와 빈농만 모집하려고 구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서는 노동자가 거의 모집되지 않았고 모집대상에 없는 중농계급도 모집되었다. 또한 서흥군에 할당된 모집인원은 70명이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41명으로 할당인원의 58%에 불과했다.

앞서 1948년 7월에 북한 전체지역에 할당된 모병인원은 약 77,000~78,000명으로 추정되었다. 현재까지 1949년 2월에 민족보위성이 추진한 모병사업의 결과를 북한의 전체지역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현재 1949년 2월의 모병사업에 관한 통계는 할당인원의 58%가 모집된 서흥군의 모병결과가 유일하다. 이를 북한 전역으로 가정해 보면 1949년 2~4월의 모병인원은 약 45,000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 모병인원은 약 4개 보병사단을 새로 편성할 수 있는 병력이다. 그러나 1949년 4월 당시 황해도 서흥군의 모병사업 결과를 보면 북한 당국이 1949년 2월에 추진한 모병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모병의 목표인원이 모집되지 않았고 신병들의 계급적 성분도 모병규정과 일치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1949년 4월까지 애초에 목표한 모병인원을 모집하지 못한 것은 모병규정이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지역 인민위원회에 모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와 빈농을 집중적으로 모집해 군대의 계급성분을 개조하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는 노동자가 적고 빈농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지역에는 모병대상이 아닌 중농이나 지주도 거주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계급구성을 고

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병규정을 지시했기 때문에 모병사업의 목표는 애초에 달성될 수 없었다.

또한 모병사업이 실패한 데에는 지역인민위원회에 모병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지 않았고 지역에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이 부족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북한의 각 지역인민위원회는 이미 1948년 1월과 1948년 7월에 모병사업을 집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 지역인민위원회에는 1949년 2월 까지 모병사업의 전담부서가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모병경험을 축적할 수 없었다. 또한 시·군·면의 심사과정에는 인민위원회·내무서·노동당·사회단체의 간부들만 투입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자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병사업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각 지역에서 진행된 모병사업의 경험이 지역인민위원회에 종합되거나 축적되지 못했다. 게다가 각 면단위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가 합격자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군심사와 도심사의 과정에서 불합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북한당국이 1949년 2월에 추진한 모병사업은 목표한 병력을 모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되었다.

#### 4. 맺음말

북한의 병역제도는 해방 이후에 기본적으로 모병제로 시작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육군의 편제상 정원을 충원해 북한군을 창설하기 위해 1948년 1월 20일에 신병을 모집했다. 그리고

전체 부대를 완편하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1948년 7월부터 만 18~24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소련군 철수로 인한 국방력의 공백을 메우고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1949년 2월부터 만 18~25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일제시기에 군대 경력자가 가장 많은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군대를 급속히 확편하려고 구상했다.

모병대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합격의 기준은 군대에 복무하기에 적합한 신체조건과 노동당이 선호하는 계급·경력·사상이었다. 건강한 신체와 친노동당적 사상은 모두 합격의 필수조건이었다. 북한 당국은 국가수립 전후에 중농·지주·청우당원·월남민가족 등을 모병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노동자와 빈농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입대시켰다. 이들은 국가수립 이후에 노동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빈농계급을 집중적으로 입대시킴으로써 북한군의 정체성을 친노동당적이며 계급적 군대로 재편하려고 구상했다.

국가수립 전후 북한 당국은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모병제를 표방했지만 실제 모병과정에서는 각 지역마다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할 병력수를 할당했다. 이 모병제는 분명히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병역제도가 특정 나이의 모든 공민(公民)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는 자발성과 강제성이 공존하는 ‘할당제가 부과된 모병제’였다.

그러나 할당제가 부과된 모병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병된 인원은 할당인원보다 적었다. 그 이유는 군심사와 도심사 과정에서 불합격자가 많았고 비슷한 연령을 연이어 모병함으로써 모병대상자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1948년 1월부터 1949년 4월까지 총 3차에 걸친 모병

사업을 통해 만 18~25세 중 군대 복무에 적합한 신체·계급·사상을 가진 청년들을 대부분 모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모병된 병력은 1949년 4월 이후에 북한군이 확편될 수 있는 인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 글은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북한이 처음 실시한 병역제도의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6·25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명하지 못한 주제가 있다. 이는 1949년부터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북한의 병역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같은 시기 남한의 병역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이다. 이상의 주제는 지면 관계상 다음 연구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1. 사료

『法律 第47號 兵役法』(昭和2年 3月 31日),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자료번호: A0302163629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김광운 편, 『북조선실록』 1권, 서울: 코리아데이터프로젝트, 2018.

勞動省, 『로동』 제1호, 평양: 勞動省, 1949.3.15.

서흥군인민위원회 군사등록계, 『〈軍秘〉 1949년도 일반서류철』,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6, Item 21.

서흥군인민위원회, 『人民軍隊募集에 關한 書類』, 서흥군인민위원회,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5, Item 44.

전현수 역,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서울: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 2. 단행본

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解放과 建軍),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서울: 나남, 1997.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예프게니 바자노프 · 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이재훈, 『蘇聯軍事政策』,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秘史』 中卷, 서울: 兵學社, 1977.

토마스 퀴네 외 저, 조정식·박은주 옮김, 『남성의 역사』, 서울: 솔출판사, 2001.

### 3. 논문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서홍석, 「조선인민군 총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 『역사와현실』 104호, 한국역사연구회, 2017.

신주백, 「일제말기 조선인 군사교육(1942.12~1945)」, 『한일민족문제연구』9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5.

최유리, 「일제말기 징병제 도입의 배경과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1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표영수,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사훈련 현황」, 『승실사학』 30호, 승실사학회, 2013.

〈Abstract〉

## The Actual Status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Recruitment of Soldiers in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Kim, Seon-Ho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North Korea was basically operated as a volunteer military system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Korean political forces recruited youths on January 20, 1948 to fully organize the army, and recruited young people from July 1948 to fully organize the Korean People's Army(KPA).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so mobilized young people aged between 18 and 25 from February 1949 to prepare for a full-scale attack.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rapidly expand its army by intensively recruiting young people born in 1924-1925, who worked in the Japanese army before liberatio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North Korea was not a complete volunteer military system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but a volunteer military system combined with the allocation system. However, the number of troops actually recruited was less than the number assigned troops.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re were many dropouts in the screening process and fewer people were recruited by continuing to recruit similar age groups.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cruited most of the eligible young men between the ages of 18 and 25 through military service from January

1948 to April 1949. The troops recruited during this period were the foundation upon which the KPA could be expanded after April 1949.

Keywords: North Korean Army, Korean Workers' Party,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Conscription System, Korean War

